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성남

# 유니버설 디자인 학교



워크북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성남

# 유니버설 디자인 학교



워크북



---

#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

최령 |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2016. 12



우리 사회의 변화

## 2016년 대한민국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아기도 젖병도 없이  
손가방 하나 달랑 태우고 가고 있다.  
이 유모차를 타던 아기는  
올 봄에 벌써 1학년이 되었다.  
아기 손목이 굵어지는 동안  
할머니 손등은 더 쪼글쪼글해지고  
아기 종아리가 통통해지는 동안  
할머니의 키는 더 작아졌다.  
오늘은 유모차가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있다.  
-안도현-

2015년 662만명, 전체인구의 13.1%

###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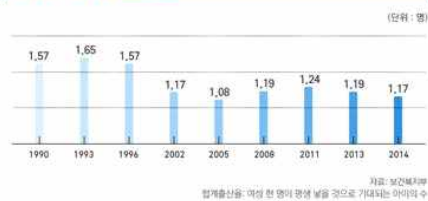
코리아신드롬(*Korea syndrome*)

유엔미래포럼예측  
-2305년예측  
: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 정도거주



옥스퍼드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콜먼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계 출산율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

2015년 합계출산율 1.24



## 디자인의 역할변화

심미성과 사용성 등의 개선  
기업의 가치 창출  
부가가치향상

삶의 질 향상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제공

오늘의 디자인?



우리의 생활환경, 현재 진행형



우리의 생활환경, 현재 진행형



우리의 생활환경, 현재 진행형



인간을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이해하기



## 다양함이 공존하는 사회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환경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생활환경을 이용하는 우리들 대부분은 보통사람. “평균”



“평균”은 환상. 우리 모두 늙어가고 수시로 평균 이하를 경험한다.



이렇게 양손에 가방을 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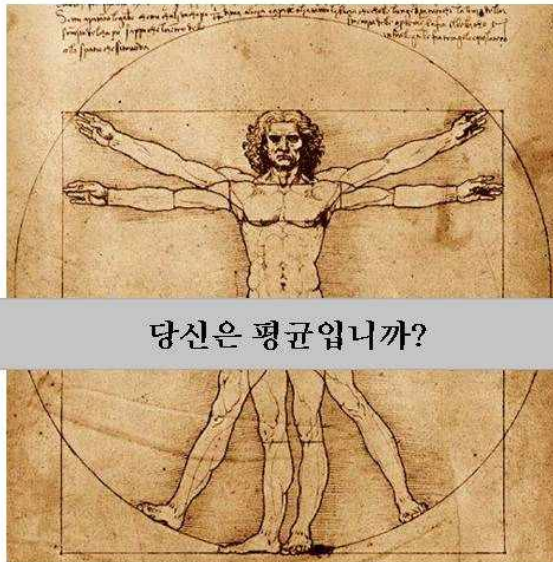




비가 오거나 혹은 눈이 내린 날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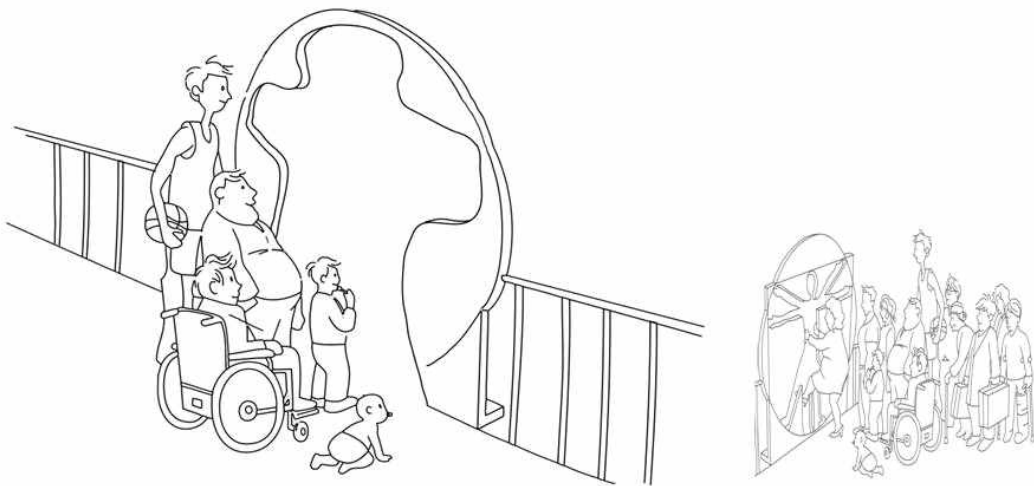
당신은 평균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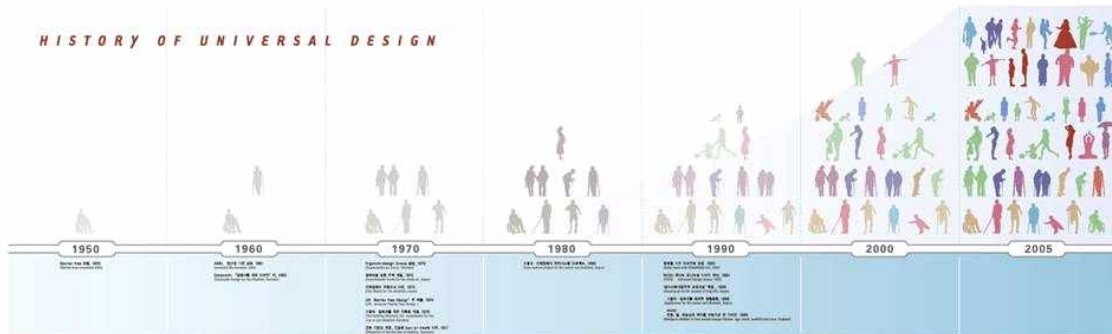


디자인 대상, 평균에 대한 편견이 만든 우리의 생활환경



유니버설디자인은 평균이 아닌 다양한 사람의 행태에 기반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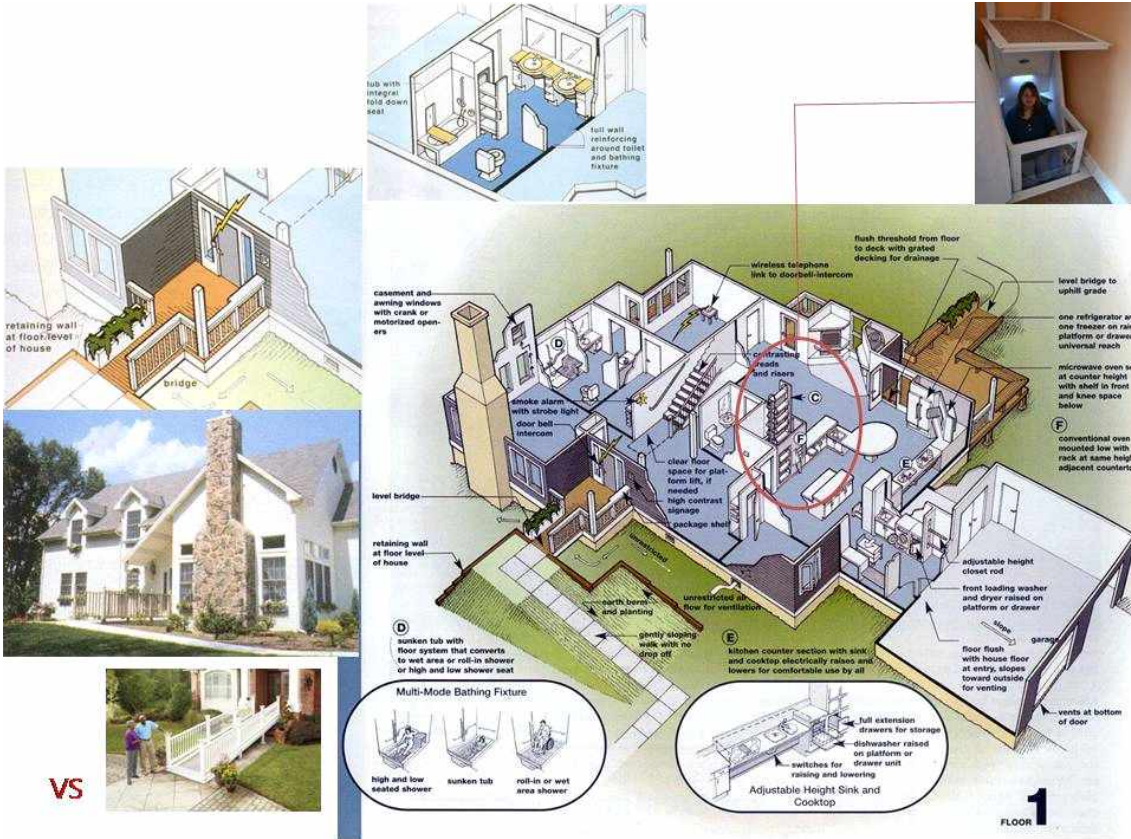
남녀노소 및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 사용하기 쉽고 쾌적하고 알기 쉬운 제품·환경·정보 만들기를, 특수한 배려를 더하지 않고 지향하는 것(*Invisible Design*)

로널드 메이스 (1941~98)

##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 원칙 1 공평한 사용에의 배려 | Principle 1 Equitable Use  
어떠한 사람이라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칙 2 사용에 있어서의 유연성의 확보 | Principle 2 Flexibility in Use  
여러가지 사용법이나 사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 사용하는데 자유도가 높다.
- 원칙 3 간단하고 명확한 사용 방법의 추구 | Principle 3 Simple and Intuitive Use  
사용법이 명확하고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원칙 4 이해하기 쉬운 정보에의 배려 | Principle 4 Perceptible Information  
쓰는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해진다.
- 원칙 5 사고의 방지와 오작동에의 수용 | Principle 5 Tolerance for Error  
위험하게 잘 연결되지 않고, 만일의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가진다
- 원칙 6 신체적 부담의 경감 | Principle 6 Low physical Effort  
신체에 부담을 느끼지 말고 자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원칙 7 사용을 위한 공간의 확보 | Principle 7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사용자의 신체 특성에 관련되지 않고, 이용하기 쉬운 공간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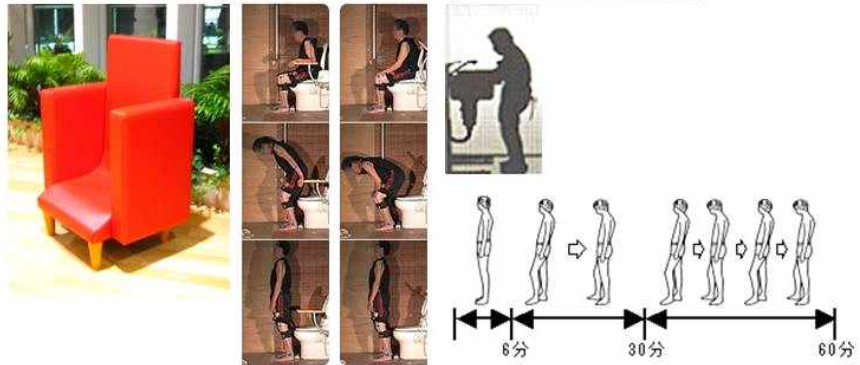


깨달음(위화감)

사람



동작



사람에 대한 이해-노인이 된다는 것



## 노인이 된다는 것

### 1. 시력의 저하(65세 이상)

- 고정된 물체에 대한 시력(SVA: Static visual acuity) : 30대에 비해 80% 수준으로 (Mori and Mizohata, 1995).
- 움직이는 대상에 대한 시력(DVA: Dynamic visual acuity) : 중년에 비해 50% 수준(Klien, 1991).
- 야간 시력 약 30%가 감소
- 반사광으로부터의 회복 속도 젊은 사람들에 비하여 약 2배 이상이 소요(Olson, 1988).
- 움직이는 물체간의 거리를 파악의 실패율: 30-40대의 10%에 비해 20% 이상 증가
- 앞에 있는 장애물까지의 거리에 대한 파악도 매우 열등(Hill and Mershon, 1985).

### 2. 시야의 좁아짐 &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야결손



### 3. 백내장 등에 의한 시야의 황변 및 흐려짐



## 노인이 된다는 것

### 1. 청각의 변화

- 약 30%는 청력 손상이 발생되며 특히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발생
- 청각장애가 심해지면 소리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Bromley, 1974).

### 2. 반응속도의 저하

- 신경계에서 근육계로의 정보전달 시간이 느려져 젊은 사람보다 30%가 더 걸림
- 정확도가 추가되면 젊은 사람에 비하여 1.6배 더 소요됨
- 선택 항목이 추가될수록 반응속도 느려지고 오답률 높아짐(George and Ariella, 1992).

### 3. 행동의 둔화

- 악력과 등의 근육력이 줄고 목과 허리의 동작반경도 좁
- 관절통을 앓게 되어 머리와 허리를 움직임 부자연스러움(JTSEA, 1979).
- 보폭도 젊은 사람의 반 정도이고 보행 속도는 그 보다 더 느림
- 정지 동작에서 첫걸음을 옮기는데는 더 더욱 느려짐.
- 흔들거리면서 걷는 동작이나 미끄러지듯이 걷는 동작 등이 나이 들에 따라 나타남(Tokuda, 1987).
- 혈압강하제를 투여(고혈압)시 몸의 조절능력이 떨어지고 평형감각을 상실(임평남,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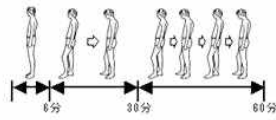
### 4. 판단력 저하

- 위험예측능력이 낮아 주어진 상황의 위험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다음 순간 어떻게 상황이 변화할지, 그에 따라 어떠한 위험이 초래될지 등에 대한 판단과 예측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김종환, 1999).



## 서 있기

젊은이와 노인의 작업실루엣



## 류머티즘환자의 변형된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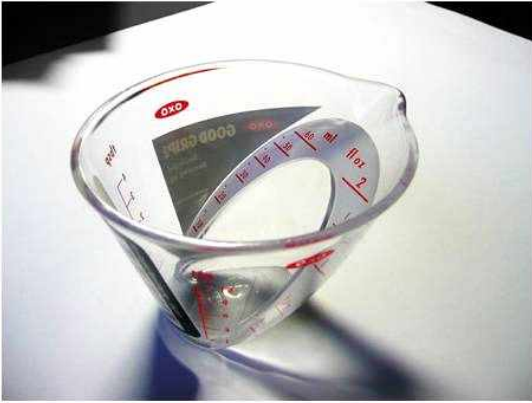
옥소(OXO)의 굿그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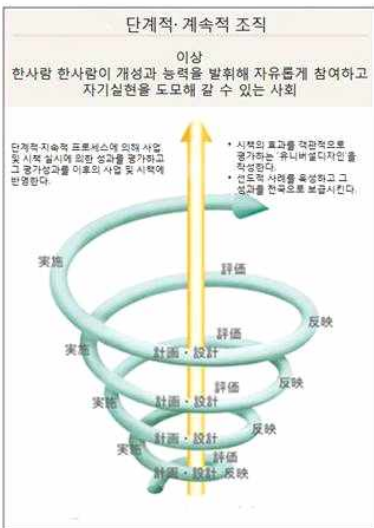
질문



# 옥소(OXO)



프로세스를 따라



√ 공간을 만드는 사람 : 현장견학과 토론 중심의 도구모음

◦답사 → 질문서작성 → 자료분석 → 토론 → 참여

◦질문서 - 8개 카테고리, 41개 항목

- ① 접근성 : 동선과 배치
- ② 사용 : 어떤 활동과 기회 제공
- ③ 다양성 : 공간이 상이한 요구 충족
- ④ 관리 : 깨끗하게
- ⑤ 환경 : 안전, 편안
- ⑥ 디자인과 모습 : 어떻게 보여지며, 어떤 재료
- ⑦ 커뮤니티 :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중요
- ⑧ 개별평가 : 개인 느낌과 감상

##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



## 보이지 않는 불만과 불편을 찾아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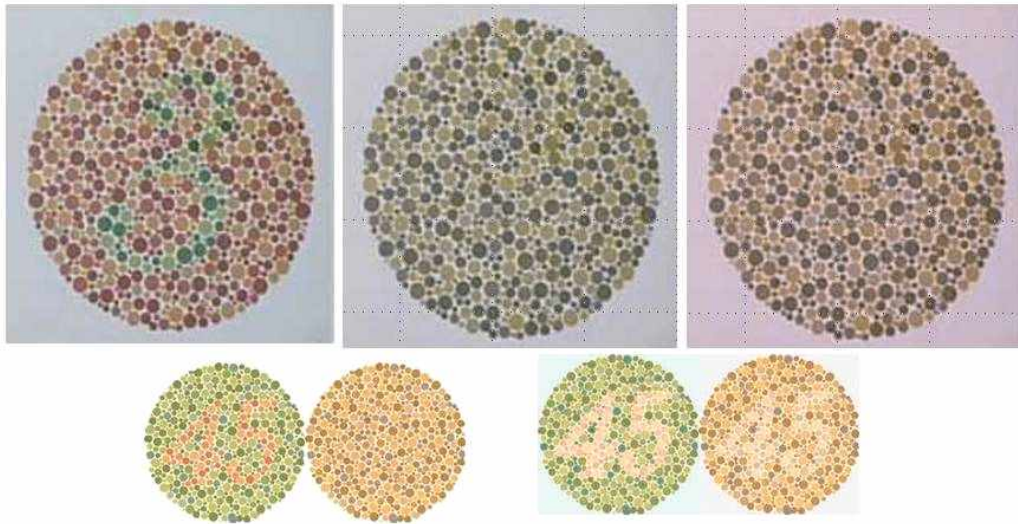
예제 수원시청의 EV 설치 사례



예제 여성들의 화장실 사용 실태 그에 따른 디자인 결과물







Typ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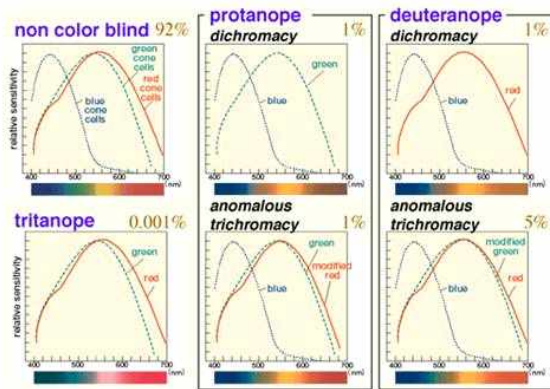
Type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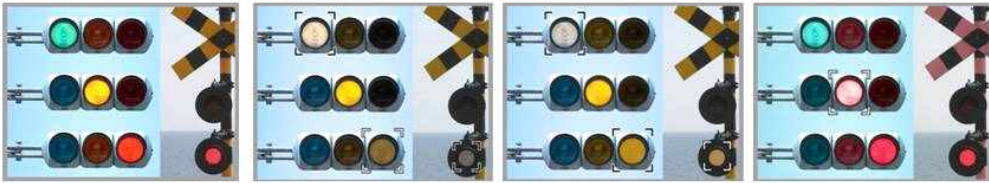


Type T



Type D





한국에서 색각 이상자의 비율은  
남자의 경우 6% 정도이고  
여성의 경우 0.4% 수준이라고 함

부겐빌리아





Typ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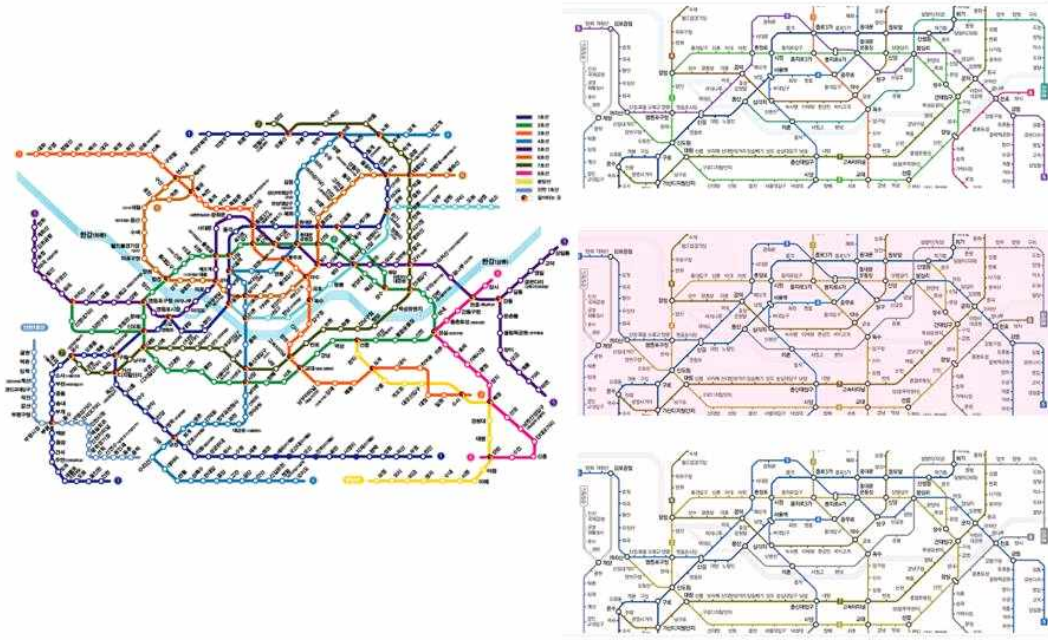


Type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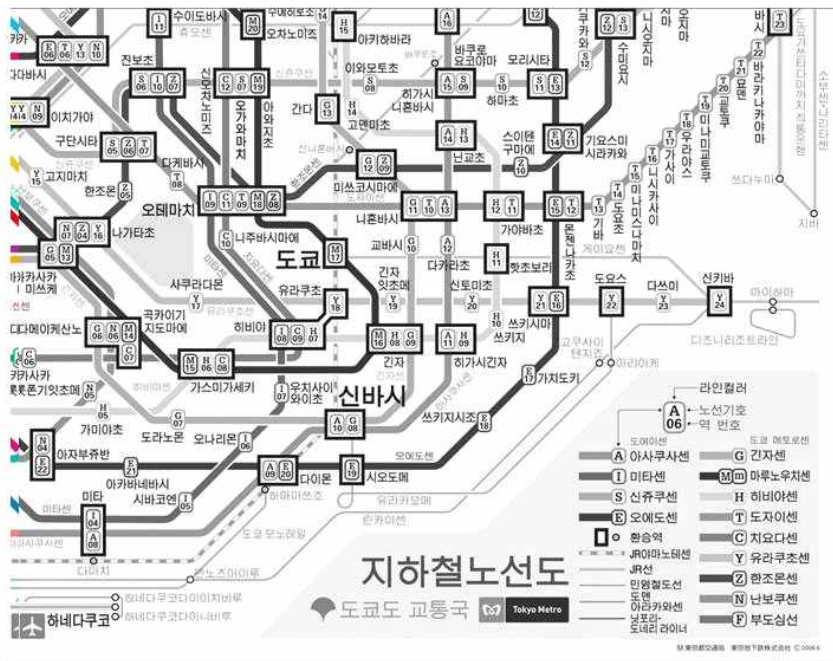
Type P



Type D



서울시 지하철안내도



동경도 지하철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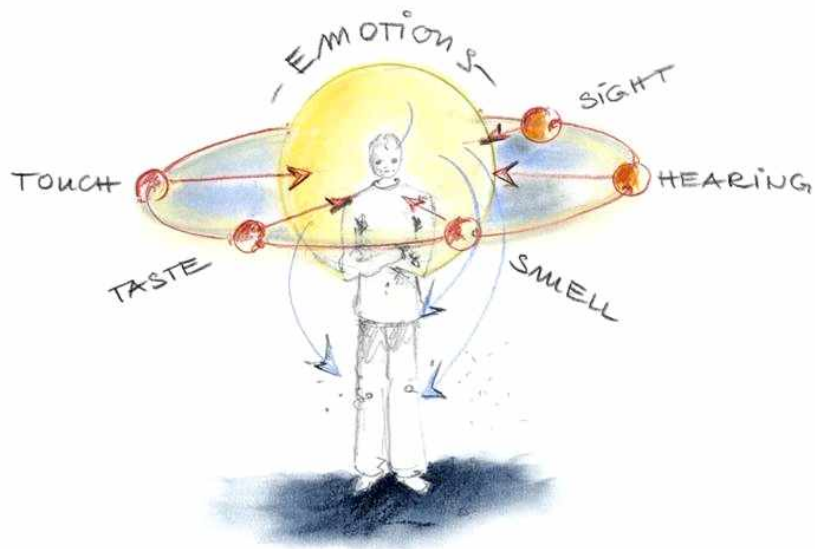


누가 만든 안내도일까요?





세상은 눈으로만 보고 기억하진 않습니다



오감을 통해 만나고 경험하고 기억하며

질문)오감으로 환경 평가하기















## 해외사례

### 2013년 유니버설디자인



####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2025(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액션플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제품과 환경의 계획·디자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며, 그것을 통해서 누구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고 평가가 확보되고 있는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려는 생각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제품과 환경의 디자인이며, 개변이나 특별한 디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유니버설 디자인 전략은 규범적인 것이며, 제품이나 환경의 질을 경하는 골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의 모든 멤버가 대등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개개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해답이 가져오는 이점은 종합적인 흐름 속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 유니버설 디자인 전략은 다른 사회 목표와 관련해서 적용되어 다양한 디자인 활동의 반드시 필요한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2025(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액션플랜

### 유니버설 디자인 전략의 기본적 목표의 하나

기존의 장벽을 없애고, 또 그러한 장벽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의해서,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평등, 그리고 사회에의 전면적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

「기능이 쇠약해지고 있다」 혹은 「기능 장애」라는 말은, 신체의 일부 혹은 신체의 물리적·인식적 기능이 없어지거나 손상되거나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애」는 개인의 능력과 물리적 환경 혹은 사회적 요구와의 사이에, 기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어긋남(꺾)이 있을 때 생깁니다.  
완전한 사회 참가와 평등을 달성하는데 발생하는 최대의 과제는, 사회 그 자체가 디자인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노르웨이 공식 보고 2005: 8 평등과 접근(Accessibility), 및 2001: 22 유저로부터 시민에게).

-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은 새로운 생각이며, 기능이 쇠약해진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Accessability)이라는 개념의 의미보다도, **평등에 훨씬 중점을 둠**
- 특별하게 타겟팅된 해결책(specially-targeted solutions)으로 장애자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해결책은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포함시켜서 디자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규정된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
- 이 의미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모든 작업 프로세스에서 디자인이 일반적인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커뮤니티 계획, 토지 이용, 건축, 건설 활동, 제품 개발 그 외 모든 분야를 포함.



















## 영국의 유니버설디자인(INCLUSIVE DESIGN)

평등, 포괄적이고 응집력 있는 사회로의 공헌을 위한 장소를 보장하는 디자인



건물과 공간의 질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소의 설계, 계획 및 관리에 대한 결정은 소속감을 강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들은 보편의 대한 느낌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경계를 늘리거나 제한할 수 있고, 유동성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저해시킬 수 있다. 그들은 커뮤니티간의 현실과 상상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고, 이해와 정신의 관대함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접근성은 지난 십 년간 개선되고 있고, 한번 제외된 커뮤니티에 새로운 시설을 제공하는 투자처럼 계획 정책이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이 훨씬 더 품질이 낮은 환경에서 살 가능성이 높은 현실은 남아있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새롭게 조성되는 장소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기획자 및 디자이너는 보다 밀접하게 그들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할 필요가 있다.

## 영국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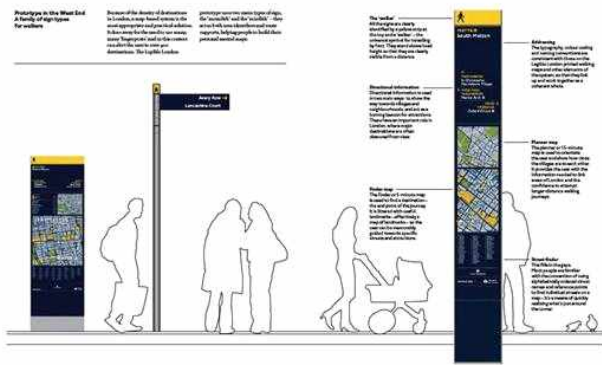
### Inclusion by design - Equality, diversity and the built environment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접근가능하며 이용에의 유혹과 흥미로운 문화 공간을 의미  
의미하는 것은 :

- 손 닿는 곳(구할 수 있는, 적절한)
- 답답하지 않은 장소
- 당신은 걱정(불안)에서 자유롭고, 품위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곳
- 당신이 반말(편하된 언어)을 듣지 않는 곳
-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머무를 수 있는 곳
- 당신이 집에서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는 곳
- 관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
- 편안함의 중요성을 아는 관리
- 최신 기법을 사용한 관리
- 참여를 극대화하는 기술.

좋은 문화 디자인은 즐거움의 장소- 사람들의 진정한 장소-가 포함되고 소속감을 느끼는 장소를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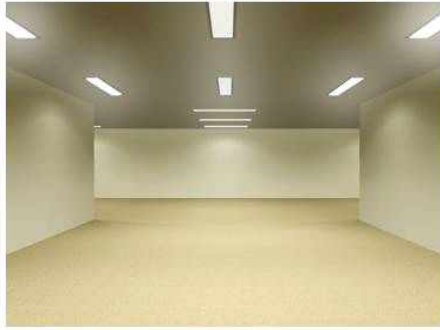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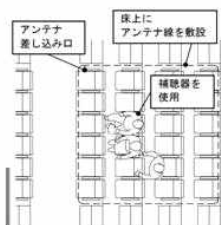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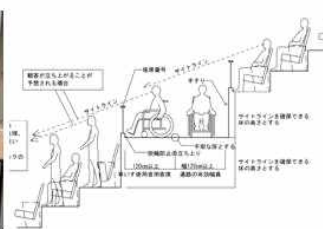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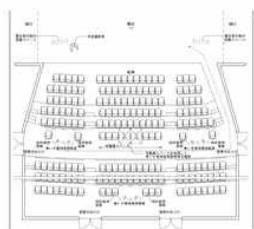


**일본 유니버설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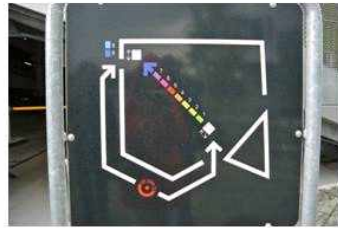








덴마크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Office Building in Denmark



## 유니버설디자인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용인시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용인시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성남시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성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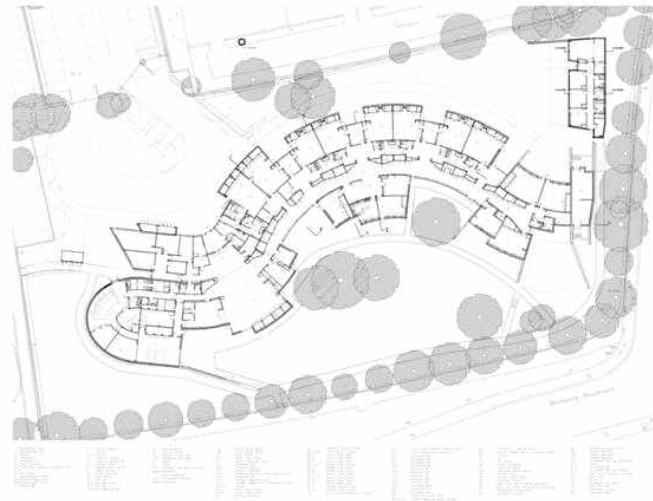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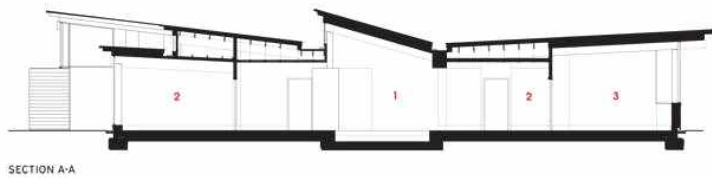


영국 Glasgow에 위치한 학교로 건축가 Gordon Murray와 Alan Dunlop이 설계

평면도



단면도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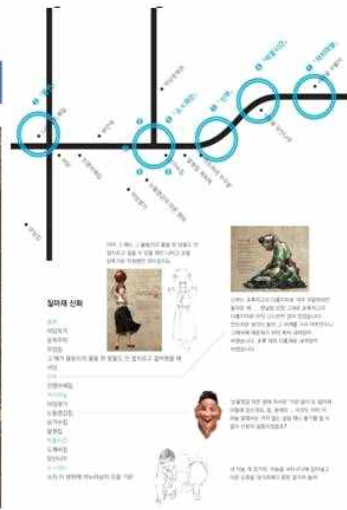


정체성





이야기가 있는 산책로



침향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로 딱딱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잡아 넣어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참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밀려서 뺐개어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백년은 수저(水底)에 가라앉아 있어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합니다. 천 년쯤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습지요.

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陸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에 집어 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딸이나 손자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未來)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後代)들을 위해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는 이와 깨내 쓰는 사람 사이의 수백 수천 년은 이 침향 내용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러운 것일 뿐, 딱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무장애(법적 최소한)를 넘어 디자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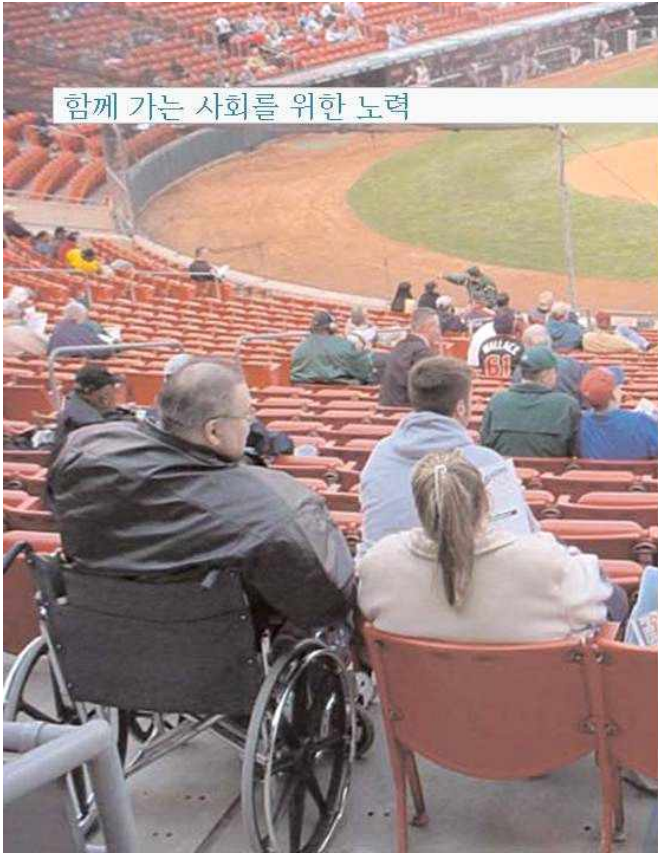


배려를 넘어 존중받는 사회로



우리의 눈높이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한 노력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인디언 속담-

## Good design in a changing world

Well-designed and maintained places have a positive impact on every person every day.



Walworth Road in Southwark



'If we succeed, all of our towns and cities will have streets that are safe, practical and enjoyable for everyone'







---

#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



② 민원실

안내사인	안내의 유무		발견하기 쉬움		알기 쉬움						보조안내			기타 (자유기입)
	있음	없음	좋음	나쁨	좋음	나쁨	사인 색상		문자 크기		외국어	음성	점자	
							좋음	나쁨	좋음	나쁨				
번호표 안내														
각 민원데스크 안내 사인														
민원서류안내사인														
비상구 안내														

공간 사용성		유무		사용 편의성				기타 (자유기입)
		있음	없음	매우 나쁨	나쁨	좋음	매우좋음	
출입 및 이동	출입문 폭							
	바닥 재질							
공간	민원 데스크							
	민원 서류 작성대							
	보조기구(돋보기,보청기)							
	대기공간							
	독립된 상담실/ 창구 공간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감성	공간의 느낌1 (형태, 배치, 가구 등)		공간의 느낌2 (색, 마감재 등)		기타 (자유기입)
	딱딱하다	부드럽다	차갑다	따뜻하다	
민원실					

편의공간	유무		공간의 느낌 1		공간의 느낌2		기타 (자유기입)
	있음	없음	딱딱하다	부드럽다	차갑다		
수유실							
휴게실							

※ 있는 경우에만 체크하여 주십시오.

③ **화장실** ※ 민원실과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안내사인		안내의 유무		발견하기 쉬움		알기 쉬움		보조안내						기타(자유기입)		
								사인 색상		문자크기		외국어	음성		점자	
								좋음	나쁨	좋음	나쁨					있음
진입방향	화장실 안내 (남녀구분) 사인															
화장실 앞	내부 설비 안내 사인 (촉지도 포함)															
부스앞	사용중 사인															
부스앞	부스 내부 설비 (영유아보호의자 등)															

공간 사용성		일반화장실						( ) 화장실							
		유무		사용 편의성				기타	유무						기타
		있음	없음	매우 나쁨	나쁨	좋음	매우 좋음		있음	없음	매우 나쁨	나쁨	좋음	매우 좋음	
출입 및 이동	출입문 폭														
	바닥 재질														
내부 설비	잠금장치 방식														
	안전손잡이														
	물 내림 버튼														
	짐을 놓을수 있는 선반														
	가방걸이, 옷걸이														
	영유아 화장실 보호의자														
	설치높이														
세면대	접근을 위한 발, 무릎공간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수도꼭지 물 트는 방법														

※ 장애인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은 안내사인에 표기된 대로 ( )안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감성	공간의 느낌 1(형태, 배치, 가구 등)		공간의 느낌 2(색, 마감재 등)		기타(자유기입)
	딱딱하다	부드럽다	차갑다	따뜻하다	
일반화장실					
( ) 화장실					

④ 프로그램실 [유형 : 강의실 / 컴퓨터 교실 / 공부방 / 도서관 / 댄스교실 / 미술실 / 기타 (                    ) ]

※ 해당 유형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안내사인	안내의 유무		발견하기 쉬움		알기쉬움		보조 안내				기타 (자유기입)			
	있음	없음	좋음	나쁨	좋음	나쁨	사인 색상		문자 크기			외국어 있음	음성 있음	점자 있음
							좋음	나쁨	좋음	나쁨				
층 내 공간(프로그램실) 안내														
프로그램실명														
프로그램 내용 정보														
비상구 안내														

공간 사용성		유무		사용 편의성				기타 (자유기입)
		있음	없음	매우 나쁨	나쁨	좋음	매우 좋음	
출입 및 이동	출입문 폭							
	바닥 재질							
공간	의자 및 책상							
	우산 등을 둘 수 있는 수납공간							
	신발을 신고 벗을수 있는 공간(신발을 벗는 프로그램실)							
	책장 (도서실의 경우)							
	교구 및 기자재 수납 공간							

감성	공간의 느낌 1 (형태, 배치, 가구 등)		공간의 느낌 2 (색, 마감재 등)		기타 (자유기입)
	딱딱하다	부드럽다	차갑다	따뜻하다	
프로그램실					



⑤ 이동공간

안내사인		안내의 유무		발견하기 쉬움		알기 쉬움		보조안내						기타(자유기입)		
		있음	없음	좋음	나쁨	좋음	나쁨	사인 색상		문자 크기		외국어	음성		점자	
								좋음	나쁨	좋음	나쁨	있음	있음		있음	
엘리베이터 앞	층별 안내															
	층수 안내															
엘리베이터 내부	층별 안내															
계단입구 또는 내부	층별 안내															
계단 내부	층수 안내															

이동공간	이용 수단 (복수 체크 가능)				이동로의 상태 (평탄함, 재질 등)		이동성 나쁨 → 보통 → 좋음				기타 (자유기입)	
	평지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편리	불편	불가능	가능	쉬움	쾌적		
부지 외부 ~ 부지 내부												
부지 내 ~ 건물 앞												
건물 앞 ~ 민원실												
민원실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앞)												
민원실 ~ 화장실												
민원실 ~ 목적층												
건물 앞 ~ 목적층												
목적층 ~ 목적지												
목적층 ~ 화장실												



참고자료

---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





#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 제정) 2010.01.11 조례 제2397호

(일부개정) 2010.12.20 조례 제2439호

(일부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03.12 조례 제2544호 (성남시 경관 조례)

관리책임부서 : 디자인정책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며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상징물·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민법」제32조, 「지방공기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12.20>

3.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함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을 배려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사고방식을 이른다.<신설 2010.12.20>

## 제2장 공공디자인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2.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3.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4. 지역 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5. 쾌적성, 안정성, 기능성의 확보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제4조(공공디자인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성남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5. 디자인 개발·육성

6. 기타 디자인 문화증진 등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분야별 관련부서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범위)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 : 내부시설(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등), 위생시설(욕실, 화장실 등) 등
2. 주차장 : 주차구역, 주차면적 등
3. 도로 및 교통시설 : 점자블록, 폭, 기울기, 숫자표시 신호등, 버스 등
4. 공원 : 공원 출입구, 보도, 점자블록, 화장실, 휴게시설 등 <본조 신설 2010.12.20>

제4조의3(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및 그것들에 부속한 공작물(이하 “공공시설 등”이라고 한다)의 신축 등(신축, 신설,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도록 한다. <본조 신설 2010.12.20>

제5조(디자인 진흥사업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디자인 진흥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브랜드, 시의 상징디자인 등의 연구·개발
2. 공공디자인 연구·개발
3. 디자인 문화 증진사업

4. 디자인 교육 및 우수인력의 발굴·육성 사업,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장려
5. 디자인 인프라 구축사업
6. 디자인 국제교류 사업
7. 기타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디자인업무의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 부서의장”이라 한다)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 및 턴키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디자인부서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③ 제2항 제1호 별표1의 관련부서에서는 소관 위원회에 디자인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 시에 디자인 개발비용을 반영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디자인의 검토) 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2.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제9조(디자인 협의시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디자인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기초부터 완료된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기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10조(협의결과 조치 등) 디자인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디자인관련 시설의 설치) 시장은 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디자인 관련 전시관, 정보실, 디자인센터 등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디자인 기초조사) 시장은 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디자인 수요조사
2. 디자인 관련 학계·기업·전문회사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3. 디자인 관련 실적물·시제품 등 유·무형의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조사
4. 디자인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제3장 성남시공공디자인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2명), 관계공무원과 시각·색채·인테리어·조경·공간·환경·조명·공공예술·산업·건축·도시계획·사회복지 등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12.2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디자인 진흥을 위한 자문 및 심의, 정책제안
3. 디자인 관련 시책 및 행사의 기술평가 심의 및 자문
4. 디자인 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건의
5.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
6.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7. 우수공공디자인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심의
8. 기타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개정 2012.0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 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8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16>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여비 등의 실비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실비를 준용한다.

## 제4장 보 칙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0.01.11 조례 제2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제정 2010.12.30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44호>(성남시 경관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조(항)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별표1]

###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제7조, 제14조 관련)

#### 1 공공건축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공공청사	가. 지방자치단체 청사(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공공시설(주차장, 화장장/납골당,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문화복지시설	가. 경기장 나. 체육관 다. 공연장 라. 의료·복지시설 마. 복지회관 바. 터미널 사. 광장·공원·놀이터 아. 식물원 등
전시·홍보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홍보관 라. 전시·기념관 등

####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로, 지하도,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등

###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도로부속시설물	가. 가로등(보안등 포함) 나. 도로안내사인 다. 횡스 라. 볼라드 마. 가드레일 바. 경계석 사. 보도블럭 .맨홀등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지역/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사인 라. 동상·기념비 마. 조형물 바. 기타 인공구조물 등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수 지주대 다. 가로 화분대 등
휴게시설	가. 벤치 나. 의자 다. 파고라 등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등
친수공간시설	가. 하천 나. 공원 및 도시 내 수경공간 다 분수대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교통 감시시설 자. 주정차금지 안내 등
서비스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나. 자전거도로 등
통행시설물	가. 버스정류장 쉼터 나. 택시정류장(쉼터형 포함) 다. 환승정류장 등



#### 4. 공공시각매체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지시/유도매체	가. 방향유도사인 나. 각 종 픽토그램 등 기타 시각매체의 디자인
광고기능매체	가. 광고판/ 게시판 나. 포스터 다. 배너 라. 홍보영상 등
행정기능매체	가.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사인 나. 공공기관 상징사인 다. 각 종 출판물 표지 라. 각 기관 웹페이지 등
환경연출매체	가. 벽화/ 수퍼그래픽 나. 미디어아트 다. 오감연출매체 등

#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시행 2013.12.01.]

(제정) 2013-11-11 조례 제 4639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경기도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사용자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 적용
2. 개성 존중을 통한 폭넓은 참여 중시
3.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환경 고려

제3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개성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도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과 도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이하 “도민 등”이라고 한다)와 상호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② 도지사는 시·군이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기술적 조언 및 필요한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보급·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2장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도나 시·군, 도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시행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대상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및 향상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도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체계
5.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상품 및 제품의 개발 및 보급 체계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변경)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절차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가이드라인의 시행)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을 조성·관리하려는 때에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에 조성된 환경 등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 등을 관리하는 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실현방안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역의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인증마크의 교부) ① 제9조에 따라 환경 등을 조성·관리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다는 증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청구자에게 인증마크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조성 및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조성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4.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에 관한 업무
5.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6.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한 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한 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에 있어서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도민 등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1.11.>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제7조제1호 관련)

### 1. 공공공간

분류	세부 항목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 단, 타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심의·자문
가로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

### 2. 공공건축물

분류	세부 항목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
문화·복지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그 밖의 시설	도 및 도 출연·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 3. 도시기반시설물

분류	세부 항목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등

### 4. 가로시설물

분류	세부 항목
교통시설물	가. 가로등 나. 웬스 다. 볼라드 라. 가드레일 마. 버스·택시 승차대 바. 자전거보관대 사. 보행유도등 아. 교통차단억제물 자. 주차관련 시설물 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 나. 파고라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등
그 밖의 시설물	가. 가로수보호덮개 나. 가로화분대 다. 배수구덮개 등

### 5. 공공매체

분류	세부 항목
정보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그 밖의 각종 공공목적의 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 등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 UNIVERSITY DESIGN

